



영업비밀인 탱크 제조 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존재확인사건

02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5년(와) 제8314호
판결 일자	1998. 12. 22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일부인용
원고	닛신화학공업 주식회사(승계전 원고 日進ケミカル工業株式会社)		
피고	피고 Y1 외 4명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3조, 4조, 민법 709조, 715조		
참조 판례			
영업 비밀	불소 수지 라이닝 처리된 탱크의 제조에 관한 노하우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경업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02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불소 수지 라이닝 처리된 탱크의 제조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유지 및 5년간 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원고 직원들을 피고 회사로 대량 집단 이적케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경업 행위를 통해 원고에게서 원고 탱크 수주와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거래를 빼앗았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소장에서의 특징은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면 충분하고, 피고c는 원고의 전 직원으로 제조 과장이었기 때문에, 본건 노하우의 내용을 피고들은 파악하고 있었던 바, 본건 노하우의 내용을 소장기재 및 변경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시기에 뒤쳐진 공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 후 바로 경업 행위를 시작한 경우에는, 퇴직 후 5년을 경과하여도 또한 본건 계약서에 의한 경업 금지의부작위 의무가 존속한다. 게다가 피고 a는 원고의 전무이사, 피고 b는 영업 과장, 피고 c는 제조과장이었기 때문에, 신의칙 상 퇴직 후에도 경업 금지 의무를 진다.

제 5회 구두 변론 기일 후의 준비서면에서 순차 목록을 변경하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원고의 변론은 적기에 뒤쳐진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퇴직 후의 경업 금지 조항은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이며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는데, 본건 계약서에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 후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역도 한정하지 않고,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

04 판결 요지

피고들은 경업 금지 의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으나, 만일 해당 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건의 경우 피고들은 이미 오래 전에 원고회사에서 퇴직했고, 본건 구두 변론 종결 시에는 이미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기 경업 금지의 합의의 효력을 검토할 것도 없이, 더 이상 경업 금지 의무에 근거한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건 계약서에 의한 경업 금지의 약정은, 그 대상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 장소적 제한이 없으며, 기간이 너무 장기간인 점, 대상 조치가 없거나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의 공개, 사용 금지 이상으로 경업 금지를 인정하는 합리성이 결여되며,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05 Key Point

퇴직 후의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와의 비교교량 상 영업금지의 기간에 대해서 법원은 각종 영업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감안하여 2년 이하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